

법무법인(유한)태평양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유한)태평양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본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권 대 식 변호사

T 86.10.5879.3080  
E daeshik.kwon@bkl.co.kr

#### 조 우 송 외국변호사(중국)

T 86.10.5879.3080  
E yusong.zhao@bkl.co.kr

#### 임 나 래 변호사

T 02.3404.7474  
E narae.yim@bkl.co.kr

#### 이 걸 외국변호사(중국)

T 02.3404.7592  
E jie.li@bkl.co.kr

## 북경시의 외상투자기업 민원처리 시스템 도입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외상투자법> 등에 의하면, 국무원 주관부서 및 현급 이상의 지방정부는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북경시는 2019년 12월 16일자로 외상투자기업의 민원신청 및 처리에 관한 <북경시 외상투자기업 민원사무 관리 방법(北京市外商投资企业投诉工作管理办法)>을 제정하였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북경시에 소재하는 외상투자기업은, 중국 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기존의 행정심판(行政复议)이나 행정소송 이외에 민원신청이라는 구제 수단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원신청은 민원신청인과 관련 정부기관 간의 협상과 조율을 통한 문제 해결을 그 특징으로 하는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이 어려웠던 정부기관의 비협조적 행위 내지 비합리적인 행정행위에 있어서 유의미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외상투자법<sup>1)</sup>> 제26조 및 <외상투자법실시세칙<sup>2)</sup>> 제29조,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르면, 국무 원 주관부서 및 현(縣)급 이상의 지방 정부는 ‘외상투자기업 민원처리 시스템(外商投资投诉工作机制)’(이하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민원 신청 방식, 절차, 처리 기한 등에 관한 업무 규칙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민원처리 시스템은, 기존의 행정심판(行政复议) 및 행정소송 외에 외상투자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행정 구제 수단으로서, 민원신청인과 정부기관 간의 협상, 조율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점에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 그 성격이 다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난 2006년 상무부를 통해 <외상투자기업 민원사무 임시 방법<sup>3)</sup>>을 제정하였으며, 일부 현(縣)급 이상의 지역<sup>4)</sup>에서도 관련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기 규정들은 모두 제정만 되었을 뿐 실제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유명무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경시는 민원처리 시스템 관련 규정을 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규정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다른 행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경시는 상기 외상투자법 및 동법 실시세칙 및 <외상투자기업 민원사무 임시 방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2019년 12월 16일자로 민원처리 시스템에 관한 <북경시 외상투자기업 민원사무 관리 방법<sup>5)</sup>>(이하 “**북경시 민원사무 관리 방법**”)을 제정하였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유의 미한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1. ‘북경시 민원사무 관리 방법’의 주요 내용

‘북경시 민원사무 관리 방법’에 따른 민원처리기구, 민원신청인의 자격, 민원신청요건, 민원처리 절차 및 민원처리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 민원처리기구

민원처리기구는 (i) 민원조율기구(协调机构)와 (ii) 민원접수기구(受理机构) 총 2개의 기구로 구성되며, 각 기구의 소속 및 담당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민원조율기구:

- 소속: 북경시 상무국에 설치

1 外商投资法  
2 外商投资法实施条例  
3 外商投资企业投诉工作暂行办法  
4 상해시, 절강성, 영파시, 대련시 등  
5 北京市外商投资企业投诉工作管理办法

- 담당 업무: (i) 외상투자 민원사무의 조율, 지도 및 감독; (ii) 각 부서<sup>6</sup> 간 합동 연석회의(局际联席会议) 소집; (iii) 민원사항 중 중대한 문제에 대한 조율; (iv) 분쟁해결원칙 설정; 및 (v) 북경시 정부에 대한 중대한 민원사항 보고 및 상무부 외상투자기업 민원 사무실과의 업무 연락.

- 민원접수기구:

- 소속: 북경시 및 구/현 정부의 투자촉진서비스센터에 설치
- 담당 업무: (i) 시(市)급 민원사항 및 다수의 구(区)정부(跨区)와 관련된 민원사항, 북경시 내의 중대한 민원사항 또는 전국외상투자기업민원센터로부터 이관된 민원사항의 접수 및 처리; (ii) 민원 처리 상황의 정기적 통지; 및 (iii) 전국외상투자기업민원센터 및 각 구(区)의 외상투자접수기구와의 업무 연락.
- 민원조율기구는 북경시 단위에만 설치되지만, 민원접수기구는 북경시 및 북경시에 속한 구(区)정부 및 현(县)정부에서도 각 설치할 수 있는데, 구/현의 민원접수기구는 북경시 민원접수기구의 지도 아래 해당 관할 지역 내의 외상투자기업 민원사무를 처리하게 됨.

## 나. 민원신청인의 자격

민원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자는 외상투자기업과 그 주주들로 제한됩니다.

## 다. 민원신청요건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i) 민원대상과 민원청구의 내용이 명확해야 함;
- (ii) 민원신청인은 그 자격을 구비해야 하며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그리고
  - 민원신청인이 (a) 외상투자기업인 경우에는 기업 영업집조를 제출하여야 하고, (b) 외상투자기업의 주주인 경우에는 기업 영업집조 및 시장질서감독관리국에 신고를 마친 주주명부를 제출해야 함.
  - 외상투자기업 또는 그 주주가 대리인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 (iii) 민원사실과 이유가 구체적이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구비되어야 함.

<sup>6</sup> 북경시 정부 산하 각 국(局), 위원회(委员会).

한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원 신청을 하더라도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i) 사법 절차, 행정재판 절차 또는 중재 절차가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경우;
- (ii) 기율 검사, 감사 또는 신방(信访)<sup>7</sup> 등 부서에 접수된 사건인 경우;
- (iii) 이미 민원기구에 접수된 또는 접수 중인 사건인 경우; 또는
- (iv) 익명의 민원인 경우.

#### 라. 민원처리 절차

민원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민원신청인의 민원신청
- 민원접수기구는 민원신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 민원 접수 시 접수통지서를 발급하고, 접수하지 하지 않을 경우 반려통지서를 발급함.
- 민원접수기구(경미한 사항인 경우) 또는 민원조율기구(중대한 사항인 경우)는 민원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접수된 민원을 처리
  -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그러한 상황을 적시에 민원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함.
- 민원접수기구는 민원처리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민원신청인에게 민원처리 결과 통지

#### 마. 민원처리 방식

민원접수기관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민원을 처리합니다.

-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민원신청인에게 처리 의견 제시
- 관련 부서 간 조율이 필요한 경우 민원조율기구에 신청하여 각 부서 간 합동 연석회의 소집
- 기타 민원기구(상급 또는 하급 민원기구) 또는 상무부 외상투자기업민원센터에 이관하여 처리한 후 처리 결과 및 피드백에 대한 후속 관리
- 기타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

<sup>7</sup> 중국의 전문적으로 민원 업무를 접수, 처리, 조율하는 기구.

## 2. 시사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상급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대하여 행정행위의 적법성 내지 타당성에 대한 법적 판단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민원처리 시스템을 통한 민원신청은 민원신청인과 관련 정부기관과의 협상 및 조율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북경시의 이번 민원 처리 시스템 도입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 외상투자기업은 기존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더하여 민원신청이라는 구제 수단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게 됨.
- 외상투자기업과 중국 정부 간의 소통 창구가 마련됨에 따라 협상과 조율이라는 유연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정부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전제로 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정부기관과의 향후 관계를 고려할 때 선택이 사실상 매우 어려웠으나, 향후에는 민원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간편하면서도 신속한 문제 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실제 운용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나, 최근 중국 정부가 대외 개방, 내국민대우 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기관의 행정사무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정부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불만이 있을 경우, 소위 판시만을 찾기 보다는, 법률에 따라 적법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임.



**Seoul Office:**

0613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3

T 02.3404.0000 F 02.3404.0001 E bkl@bkl.co.kr

**Beijing Office:**

Unit 2601, East Tower, Twin Towers, B-12 Jianguomenwai Avenue,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022, PRC

T 86.10.5879.3080 F 86.10.5879.3038 E beijing@bkl.co.kr

**Hong Kong Office:**

Room 205, 2F, Baskerville House, 13 Duddell Street,  
Central, Hong Kong

T 852.2567.0800 F 852.2567.9500 E bklhongkong@bkl.co.kr

**Shanghai Office:**

Unit 2503, Tower B, Dawning Center No.500,  
Hongbaoshi Road, Changning District, Shanghai 201103, PRC

T 86.21.6085.2900 F 86.21.6085.2929 E shanghai@bkl.co.kr

**Hanoi Office:**

West Tower 2601, Lotte Center Hanoi, 54 Lieu Giai street, Cong Vi ward,  
Ba Dinh district, Hanoi, Vietnam

T 84.24.3232.1233 F 84.24.3232.1235 E vietnam@bkl.co.kr

**Ho Chi Minh City Office:**

Unit 3, 37F, Bitexco Financial Tower, 2 Hai Trieu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 84.28.38.212.303 F 84.28.38.21.24.27 E vietnam@bkl.co.kr

**Yangon Office:**

No. 82, Sin Phuy Shin Avenue, Pyay Road, 6 1/2 miles, Ward 11, Hlaing  
Township, Yangon, Myanmar

E myanmar@bkl.co.kr

**Dubai Office:**

Business Center #32, The Gate, Level 15, DIFC, P.O. Box 121208, Dubai, UAE

T 971.4.401.9921 F 971.4.401.9578 E dubai@bkl.co.kr